| | |
|---|---|
| 의안번호 | 2125887 |
| 의 뢰 인 | 최승재 의원 |
| 회 답 일 | 2023. 12. 12. |
| 추계번호 | 23D4833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Ⅰ. 재정수반요인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1 | 안 제2조제16항·제17항(정의) 및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 현행법상 정의 및 서면 기재사항 중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재료비뿐 아니라 노무비, 경비 등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비용을 포함하는 '주요 재료비등'으로 개정 | 의무규정 |

#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 1. 근거 규정

| 연번 | 조·항(조제목) | 미첨부 근거 규정 |
|---|---|---|
| 1 | 안 제2조제16항·제17항(정의) 및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 2. 상세 사유

❑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주요 재료비등’으로 개정(안 제2조제16항, 제17항)

○ 현행법은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2023. 10. 4.부터 시행하고 있음[1)]

○ 개정안은 현행법상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재료비뿐만 아니라 노무비, 경비 등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비용을 포함하는 ‘주요 재료비등’으로 포괄적으로 개정함

○ 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2)]이 물품의 제조·수리·시공·용역수행 등을 발주하는 경우 하도급거래에서의 주요 재료비등의 가격 변동이 연동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공공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추가재정소요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게 되는 경우, 현 단계에서 주요 재료비등의 가격 변동(상승 또는 하락)이 발생한 거래의

---

1) 이 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 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②~⑯ (생 략)
⑰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수, 변동금액 등에 대한 예측을 합리적으로 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 증감에 대한 추계가 곤란함

# Ⅲ. 부대의견

❑ 없음

# Ⅳ. 작성자

❑ 성명

| 국회예산정책처 | 분석관 | 과장 |
|---|---|---|
| 행정비용추계과 | 여은구 | 오명희 |

❑ 대표연락처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 여은구 | 02-6788-4673 | cecil@assembly.go.kr |